

2027

최근 국가유산관련법령 기출문제 상세해설

엠북 자격증

공부혁명!
mbook.kr

- ★ PDF 전자책
- ★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시험교재
- ★ 출제경향 분석, 고득점 전략
- ★ 25년, 26년 기출문제 상세 해설

도서명 : 최근 국가유산관련법령 기출문제 상세해설

ISBN : 979-11-7393-232-8

발간일 : 2026-08-06

형식 : 전자책(PDF)

저자 : 엠북

출판사 : 엠북

홈페이지 : <https://www.mbook.kr/>

이메일 : by4782@gmail.com

정가 : 5,500원



최근 국가유산관련법령 기출문제 상세해설

[목차]

- I. 출제경향 및 고득점 전략(p3)
- II. 2025년 기출문제(p4)
- III. 2026년 기출문제(p31~48)

[비고]

검은색은 기출문제 지문

남색은 법률 내용

보라색은 시행령 내용

갈색은 시행규칙 내용

I. 출제경향 및 고득점 전략

1. 출제 비중 및 문제 수

- 1) 문화유산법 22%(25년 5문제, 26년 6문제)
- 2) 자연유산법 12%(25년, 26년 각 3문제)
- 3) 국가유산수리법 26%(25년 7문제, 26년 6문제)
- 4) 매장유산법 20%(25년, 26년 각 5문제)
- 5) 문화유산위원회 규정 0%(25년, 26년 출제안됨)
- 6) 고도육성법 8%(25년, 26년 각 2문제)
- 7) 문화유산신탁법 4%(25년, 26년 각 1문제)
- 8) 무형유산법 8%(25년, 26년 각 2문제)

2. 출제 경향

- 문화유산법, 국가유산수리법, 매장유산법에서 68% 출제
- 문화유산위원회 규정에서 출제안됨
- 시험범위가 아닌 국가유산기본법에서 출제안됨
- 법, 시행령, 시행규칙 내용 모두 출제됨
- 별표에서도 출제

3. 고득점 전략

- 1) 문화유산법, 국가유산수리법, 매장유산법 중점 공부
 - 세 법의 법률, 시행령 내용 모두 숙지
- 2) 2027년 시험에서는 문화유산위원회 규정에서 1문제 정도 출제될 수 있으므로 대비 필요
- 3) 법률 내용은 모두 숙지하고, 시행령, 시행규칙 주요 내용도 암기 필요
- 4) 거의 대부분의 지문은 법률, 시행령에서 출제 되었고, 시행규칙 내용은 2~3문제의 지문에서만 언급되었으므로 법률, 시행령 위주로 학습
- 5) 고득점 하려면 별표 내용, 시행규칙 주요 내용도 공부할 필요 있음
- 6) 국가유산기본법은 시험범위는 아니나 국가유산관련법령과 관련 내용이 많아 읽어 보면 도움됨

Ⅱ. 2025년 기출문제

(2025년도 제43회 국가유산수리기술자 1차 국가자격시험)

[문화유산법]

1.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령상 문화유산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국가유산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
 - ② 기본계획에는 남북한 간 문화유산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③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 - ④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시·도지사에게 알리고, 관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.

정답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아니라 시도지사와의 협의

법 제6조(문화유산기본계획의 수립)

- ① 국가유산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
- 1. 문화유산 보존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
 - 2.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평가
 - 3. 문화유산 보수·정비 및 복원에 관한 사항
 - 4. 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
 - 5. 문화유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 - 5의2. 문화유산 관련 시설 및 구역에서의 감염병 등에 대한 위생·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
 - 6. 문화유산 기록정보화에 관한 사항
 - 6의2. 문화유산지능정보화에 관한 사항
 - 6의3.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에 관한 사항

- 7. 문화유산 보존에 사용되는 자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
- 7의2.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활용에 관한 사항
- 7의3. 남북한 간 문화유산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
- 7의4. 문화유산교육에 관한 사항
- 8. 문화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
- 9. 그 밖에 문화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
- ②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자,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- ③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시·도지사에게 알리고, 관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.
- ④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·도지사에게 관할구역의 문화유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
- 2.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령상 화재등 대응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하는 문화유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 (단, 화장실, 휴게시설 등 중요도가 낮은 건축물은 고려하지 않음)
- ① 지정문화유산 중 석조건축물류
- ② 보호구역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
- ③ 「국가유산기본법」에 따른 세계유산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
- ④ 매장유산으로 토지에 분포되어 있는 문화유산

정답 ④

- 대통령령 제8조(화재, 재난 및 도난 대응매뉴얼 마련 등)
- ① 화재 및 재난 대응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하는 문화유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지정문화유산 중 목조건축물류, 석조건축물류, 분묘, 조적조 및 콘크리트조 건축물류
 - 2. 지정문화유산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과 보호구역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. 다만, 화장실, 휴게시설 등 중요도가 낮은 건축물은 제외한다.
 - 3. 「국가유산기본법」에 따른 세계유산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. 다만, 화장실, 휴게시설 등 중요도가 낮은 건축물은 제외한다.
 - 4. 등록문화유산 중 건축물. 다만,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재 및 재난에 대비한 매뉴얼 등을 마련한 경우에는 법에 따른 화재 및 재난 대응매뉴얼을 마련한 것으로 본다.
- ② 법에 따라 도난 대응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하는 문화유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지정문화유산 중 동산에 해당하는 문화유산
 - 2. 등록문화유산 중 동산에 해당하는 문화유산
3.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령상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 국가유산청장은 해당 문화유산을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하려면 문화유산위원회의 해당 분야 문화유산위원 등 관계 전문가 2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해야 한다.
 - ② 국보의 지정은 그 문화유산의 소유자,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는 관보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.
 - ③ 국가유산청장은 지정된 보물이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여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체 없이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.
 - ④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을 중요문화유산으로 임시지정한 경우, 그 효력은 관보에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.

정답 ②

- ① 2명이 아니라 3명
- ③ 보물/국보, 사적, 국가민속문화유산은 문화유산위 심의거처 해제
- ④ 임시지정은 관보 고시안함

4.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령상 국가지정문화유산,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안에서 하는 행위 중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?

- ㄱ. 토지 및 수면의 매립
- ㄴ. 수로, 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
- ㄷ. 국가지정문화유산 보호구역에 안내판을 설치하는 행위
- ㄹ. 동물을 사육하는 행위

- ① ㄱ, ㄷ
- ② ㄱ, ㄴ, ㄹ
- ③ ㄴ, ㄷ, ㄹ
- ④ ㄱ, ㄴ, ㄷ, ㄹ

정답 ②

안내판 설치하는 국가유산청장 허가 사항 아님

[국가유산청장 허가사항]

- 가. 문화유산/자연유산 공통
 - 보호물/구역 포함
 - 국가지정유산, 천연기념물/명승 내 다음 행위

·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, 수입/반입 신고된 것 포함

- 1) 수리, 정비, 복구, 보존처리, 철거
- 2) 건축물 등 신축, 개축, 증축, 이축, 용도변경
 - 단, 지목변경 제외
- 3) 수목을 심거나 제거
- 4) 지형/지질 변경
 - 토지/수면 매립, 간척, 땅파기, 구멍뚫기, 땅깎기, 흙쌓기
- 5) 소음/진동/악취 유발
- 6) 대기오염물질, 화학물질, 먼지, 빛, 열 방출
- 7) 오수/분뇨/폐수 살포, 배출, 투기
- 8) 동물 사육/번식
- 9) 토석/골재/광물, 부산물/가공물 채취, 반입, 반출, 제거
- 10) 광고물 설치, 물건 쌓기
- 11) 탁본, 영인(원본을 사진 등으로 복제), 다음 촬영 행위
 - 유산을 다른 장소로 옮김
 - 유산 표면에 촬영 장비 접촉
 - 빛/열 지나치게 방출
 - 촬영 장비 충돌/추락 등 유산에 물리적 충격

나. 문화유산

- 1) 국가지정유산 현상 변경
 - 도로, 관로, 전선, 공작물, 지하구조물 등 시설물 신축 등
 - 수로, 수질, 수량 변경 등

2) 국가지정유산(단, 동산 제외) 보존에 영향

가) 보존지역

- 경관 저해 우려 건축물/시설물 설치/증설
- 지하 50m 이상 땅파기
- 토지/임야 형질 변경

나) 수로의 수질/수량에 영향 줄 건설공사 등

다) 유산과 연결된 유적지 훼손

라) 유산의 역사적, 예술적, 학술적, 경관적 가치에 영향 줄 유산 외곽 경계 밖의 청장 고시 행위

다. 자연유산

1) 천연기념물/명승 보존에 영향 미칠 다음 행위

- 가) 천연기념물 포획, 채취, 사육, 도살, 인공증식, 복제, 위치추적기 부착, 자연으로 방사, 표본, 박제, 매장, 소각
- 혈액, 장기, 피부 채취 포함
 - 치료목적, 구조/치료 후 방사 제외

나) 천연기념물/명승 내

- 수질, **수온**, 수량에 영향 줄 행위

2) 천연기념물/명승

- 지정, 임시지정 구역, 보호구역에서 동식물, 광물 포획, 채취, 반출
- 보존지역에서 보존에 영향 미칠 고시 기준 초과 행위
- 외곽 경계 외부 지역에서 청장 고시 행위

5.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령상 문화유산매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